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0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 : 윤상현 · 김선교 · 조배숙

강승규 • 이헌승 • 조정훈

천하람 • 인요한 • 김종양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임. 1인 가정 증가·핵가족화로인해 퇴색되어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자식과 부모간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법정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과는 괴리감이 있고 국민들 에게 혼란을 주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 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9호).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중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한다.

6. 어버이날(5월 8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 제2조(공휴일) | | |
| 호와 같다.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
| <u> <신 설></u> | <u>6.</u> 어버이날(5월 8일) | | |
| <u>6.· 7.</u> (생 략) | <u>7.·8.</u>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 | |
| | 같음) | | |
| <u>8. 기독탄신일</u> (12월 25일) | <u>9. 성탄절</u> | | |
| <u>9. · 10.</u> (생 략) | <u>10.</u> ・ <u>11.</u> (현행 제9호 및 제10 | | |
| | 호와 같음) | | |